

연남동 공공주택건설사업 토지교환 조건 (변경)동의안

의안 번호	31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공공임대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9조 1항 1호에 따라 공용·공공용재산(작은 도서관, 임대주택)으로 사용하고자 토지교환을 하였으나, 도서관 운영 주체가 없어 부득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9조 1항 4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토지교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토지교환 공유재산 현황

구분	소재지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이용현황	참고사항
토지 교환	마포구 연남동 245-82	282.30	1,749,413	나대지(지목:대)	사유지 → 시유지
토지 교환	양천구 신정동 1290	605.30	1,899,431	주차장(지목:대)	시유지 → 사유지

나. 토지교환 조건 변경 필요성

- 시유지와 사유지 토지교환을 통해 통합공공 임대주택 및 작은 도서관 건립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(21. 3차)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음
- 그러나, 작은도서관 운영기관(마포구) 협의결과 사용계획이 없어,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함
-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액 및 임대주택 공급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시의회 동의를 얻어 토지교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9조(교환)제1항제4호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, 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

2.~3. 중략

4.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1년 6월 16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

※ 작성자 : 주택실 공공주택과 윤진석 / 정현희 (☎2133 - 7067/7073)